

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김창호

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연철흙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17년 6월 26일

○ 회부일자 : 2017년 6월 28일

3. 제안이유

○ 청남대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의무실을 설치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○ 의무실 설치 및 인력 배치 (안 제12조)

○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

- 자(者) → 사람, 익일 → 다음 날, 귀책사유가 관람객에게 있지 아니한 → 관람객에게 귀책사유가 없는, 인정되는 → 인정하는, 판단되는 → 판단하는

5. 검토의견

○ 위 개정조례안은

- 청남대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의무실을 설치하는 조항을 신설하

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.

- 대통령 별장으로 사용되었던 청남대는 지난 2003년부터 일반 관람객에게 개방된 이후 올해까지 누적 관람객이 1천만명을 돌파하는 등 충북의 대표적인 관광명소가 되었음. 이에 반해 관람객의 안전을 위한 의무실이 없어 응급환자는 물론이고 부상이 경미한 관람객들조차 치료를 할 수 없는 실정임.
- 충북의 대표 관광지에 걸맞게 관람객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하는 의무실 설치의 바람직하다고 사료됨. 또한, 청남대 출입도로는 관람객 차량으로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이송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응급환자 이송체계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붙임: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